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나2028513(본소), 2022나2028520(반소) 판결 [구상권
청구의 소 · 구상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나2028513(본소), 2022나2028520(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가합57457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원고, 피항소인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최남식, 조
수정, 김서연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이강원, 최호영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3. 2.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가합574576(본소), 2021

가합572331(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에게 726,912,000원, 원고 B에게 181,72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 A은 피고에게 645,845,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면 10~1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 21호증”을 추가하고, “을 제1 내지 3, 6, 7, 9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의 E 및 그 대표이사 P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주주이던 원고들은 보유한 피고의 주식을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통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E과 P은 질권을 실행하여 위 각 주식의 가치 상당액을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이 사건 변제확약, 이 사건 확약과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이라 한다)에 ‘연대채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인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 A이 피고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부담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내지 물상보증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26,912,000원, 원고 B에게 181,72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2) 가) 원고 A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에 연대채무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 A은 피고, D과 함께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A이 D, P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사업이익을 1/3씩 나누어 갖기로 한 점(갑 제9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부담 부분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연대채무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A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질권 실행에 따라 726,912,000원만을

공동 면책시킨 반면, 피고는 E과 P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피고의 O에 대한 수익금 및 배당금 중 3,391,360,000원이 추심금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잔존 채무를 전액 변제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 A이 자신의 부담부분인 약 1,433,333,333원(= 이 사건 확약상 잔존채무 4,300,000,000원 $\times$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11조는 피고가 E과 P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원고들의 권한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확약 제2조는 피고의 E과 P에 대한 채무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피고의 타인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5조는 피고의 채무잔액에 관한 원고 A의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확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A이 연대보증인인지, 아니면 연대채무자인지 여부, 연대채무자라면 그 부담 부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11조 및 이 사건 확약 제2, 5조를 위반하여 부당한지 여부이다. 이하 순서대로 살펴본다.

2) 원고 A이 연대채무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 1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은 연대채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상 차이점이 그리 크지 않고, 인적담보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기능도 유사하지만, 연대채무는 단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병렬적 수단인데 반하여 보증채무는 전적으로 주채무에 대한 인적 담보제도로써 종속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연대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구별은 결국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처분문서의 문언이 연대채무로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그 문언대로의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할 의사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에서 원고 A이 ‘연대채무자’라고 기재된 부분에 인영을 날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은 연대채무자라고 보아야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확약 제5조는 “주주 원고 A은 채무금 변제 시 사업수익률이 떨어져 채권자 P에 대한 채무전액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약정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잔액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P은 이 법원에서 “원고 A이 위 규정과 같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기에 연대채무를 요구하였고, 만일 원고 A이 연대보증을 한다고 하였다면 차용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위 규정은 원고 A이 연대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채권자인 E과 P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피고와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는 채권자에 대한 표시에 관한 측면일 뿐 연대채무자 간의 부담부분에 관한 내부적 협의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3) 원고 A의 부담부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494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 9, 12 내지 14, 18, 20, 22, 23,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① 차용금의 사용 주체, ②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의 내용, ③ 연대채무자들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인식, ④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원고 A 사이에서는 피고가 차용금 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적어도 차용금 전액을 피고가 자신을 수익자로 한 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내부관계에서 피고가 그 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A은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부담부분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차용금의 사용 주체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O 설립을 위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2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23억 5,000만 원은 직접 출자하였으며, 나머지 5억 원은 한국산업은행에 예금하고 그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O에 출자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원고 A은 위 차용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의 내용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의 문언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제1조는 E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차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기한이익의 상실 및 채무상환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고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변제확약은 1.항에서 미변제 차용금이 합계 20억 5,000만 원임을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만 확인하고 있고, 2.항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사업수익 배당금으로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③ 이 사건 확약 제2조에서도 ‘채무자’인 피고가 사업수익으로 최우선적으로 E과 P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등에서는 피고만을 ‘차주’ 또는 ‘채무자’로 상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3) 연대채무자들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인식

① U의 질의회신자료(갑 제20호증)에 의하면, ‘회사가 제3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행해야 할 전체 채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채무로 처리’하는데, 피고의

2016년 말 장기차입금 명세서에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차용금은 모두 피고의 채무로만 표시되어 있고, 이후 피고가 2017. 11. 28. 주식회사 V으로부터 차용하여 E에 변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차용금을 포함한 26억 5,000만 원도 모두 피고의 채무로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28억 5,0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채무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1년 계정별원장에는 원고들에 대한 잠정적 구상채권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는 피고의 대차대조표에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다).

② 다른 연대채무자 D은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를 설립하여, 2012.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695) 수사과정에서 E과 P으로부터 차용한 28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수익금 정산시 원금 외에 28억 5,0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고, 위 돈 중 '10억 원은 상환하였고, 나머지 18억 5,000만 원은 수익금을 정산할 때 상환할 예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D도 E과 P에 대한 실질적 채무자는 '피고'이고 그 변제는 피고의 수익금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사업의 구조

① 피고는 W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의왕시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설립된 O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이며,³⁾ X 주식회사는 O의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를 목적으로 피고가 100% 지분을 소유하여 설립한 회사이다.⁴⁾ ② 이 사건 사업은 O를 사업주체로 하고, 민관합동 공동 출자개발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사업대상부지인 의왕시 Y 일원 158,708㎡를 개발하여 그중 분양대상 용지 93,394.7㎡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사업수익을 창출하였다. O는 사업시행 결과 사업수익이 발생하자, 피고를 비롯한 O의 주주들에게 당해 사업연도 결산배당을 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각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사업수익을 배당하였다.

③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수익은 곧바로 원고 A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O가 피고 등 주주들에게 각 지분별로 사업수익을 배당하여 피고가 이를 배당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구조이다. 다만 원고 A 등은 피고의 주주로서 배당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로소 수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이 D, E과 P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중 일부에 해당하는 AC 부분과 관련한 사업수익을 원고 A과 D, P에게 각 1/3씩 분배하기로 약정(갑 제9호증)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로써 사업수익이 원고 A 등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사업수익을 피고와 원고 A이 공유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11조 및 이 사건 확약 제2, 5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11조는 근질권설정자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근질권자보다 후순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확약 중 제2조는 채무자인 피고가 E과 P에게 채무금 43억 원(= 잔존 채용금 18억 5,000만 원 + 사업수익 배당금 24억 5,000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의무 및 그 변제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인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며, 제5조는 원고 A이 피고의 잔액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조항들은 (연대)채무자 내지 근질권설정자인 '원고들 또는 피고'와, 채권자인 'E과 P'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등 권리행사가 제한되거나, 원고 A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E과 P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원고 A의 주식 가액을 726,912,000원, 원고 B의 주식 가액을 181,728,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근질권을 실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 A에게 726,912,000원, 원고 B에게 181,72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질권 실행일 다음날인 202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D, 원고 A와 함께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질권 실행에 따라 원고 A은 726,912,000원을 공동 면책시켰고, 피고는 E과 P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피고의 O에 대한 수익금 및 배당금 중 3,391,360,000원이 추심금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잔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2) 연대채무자들인 피고, D 및 원고 A의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A이 공동 면책시킨 726,912,000원 중 피고 부담액은 위 공동면책액의 1/3인 242,304,000원과 이에 대한 근질권 실행 다음 날인 2020. 5. 7.부터 피고가 공동 면책시킨 날인 2021. 2. 3.까지의 법정이자 9,061,505원(= 242,304,000원 × 273/365 × 0.05)의 합계액인 251,365,505원이다. 피고가 공동 면책시킨 3,391,360,000원 중 원고 A 부담액은 위 공동면책액의 1/3인 1,130,453,333원이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879,087,828원(= 1,130,453,333원 - 251,365,505원)의 범위 내에서 645,845,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부담부분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본소청구,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봉원, 판사 강성훈, 판사 권순민

1) 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3. 1. 17.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변론재개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의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는 청구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고,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반드시 재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근거인 구상금 액수의 범위에 관한 주장은 이미 피고의 2022. 9. 7.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이상 반소청구의 변경 및 이를 전제로 한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 B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질권 실행에 따라 181,728,000원을 공동 면책시켰으나, 연대채무자인 피고, D, 원고 A에 대하여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60,576,000원(= 181,728,000원 × 1/3)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 B와 T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184,7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B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예비적 상계항변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후 변론과정에서 상계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주주 구성원은 피고(47%), 의왕시(24%), 한국산업은행(10%), Z 주식회사(5%), 주식회사 AA(5%), 주식회사 AB(5%), 한국감정원(4%)이다.

4) W 컨소시엄은 2016. 2. 11. 의왕시와 N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N사업 사업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 회사인 O 및 프로젝트 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하는 자산관리회사인 X 주식회사가 각각 설립되었다.